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양향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41

발의연월일: 2021. 5. 17.

발 의 자:양향자・윤재갑・임오경

윤영덕 • 조오섭 • 서삼석

임호선 • 전용기 • 민형배

이해식 · 위성곤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, 이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에종료될 예정임.

그런데 수협은행 등 자회사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면 어업인을 위한 경제 및 교육지원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므로, 관련 세제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체세의 면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어업인을 위한 경제·교육지원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임(안 제121조의25제7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1조의25제7항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1조의25(수산업협동조합중앙	제121조의25(수산업협동조합중앙
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	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
례) ① ~ ⑥ (생 략)	례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	⑦ <u>20</u>
<u>21년 12월 31일</u> 까지 대통령령	24년 12월 31일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	
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	
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	
⑧ (생 략)	⑧ (현행과 같음)